

중소기업의 더 밝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미래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

2020. 4.

KBIZ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I. 중소기업중앙회 대응경과	1
1.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 운영	1
2. 대응경과	2
II.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	8
1. 중소기업계 착한 임대인 운동	8
2. 노란우산공제 및 공제기금	9
3.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9
4. 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수출지원	10
5. 보건용품 스마트공장 구축 신속지원	10
참고1 : 코로나19 관련 정부 주요 지원정책(일반)	11
참고2 : 코로나19 관련 정부 주요 지원정책(수출입)	27
참고3 : 코로나19 추경예산 및 조특법 통과 주요내용	35
참고5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현황	36

(별첨) 정부 지원 대책 추가 발표내용

- 1.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 2.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II(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3.18)
-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3.19)
- 4.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3.24)
- 5.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3.25)
- 6.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 (3.27)
- 7.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3.30)
- 8.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3.30)
- 9.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III(관광, 영화, 통신 등) (4.1)
- 10.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공공부문, 민간부문) (4.8)
- 11. 위기를 기회로, 수출활력 제고방안(무역금융, GVC, R&D 등) (4.8)
- 12.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방안 (4.8)
- 1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4.9)
- 14.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 IV(부담금 등 경감, 스포츠농수산 분야 지원) (4.9)
- 15.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 (4.22)
- 16.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4.23)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대응 및 경과

①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 운영

□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1.27)
 - 「중소기업 코로나-19 비상대응반」 가동 (반장 서승원 상근부회장)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2.23)
 -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 격상 (본부장 김기문 회장)

□ 주요역할

- 신속한 피해상황 수시 파악, 정책당국에 개선 방안 전달

□ 대응체계

- 조 직 도 <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본부 >



○ 주요역할

- 운영지원팀 : 조직 내 확산 방지(직원 위생관리 등), 시차출퇴근 실시, 행사차제 등
- 협동조합팀 :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 피해사례 접수, 행사 차제 안내 등
- 중기·소상공인팀 : 실태조사(피해사례 및 정부지원책), 피해사례 접수,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협의, 정책건의(추경 반영사항 등)
- 홍 보 팀 : 정책홍보, 불안심리 최소를 위한 대응 등

② 대응 경과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피해사례 접수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수출 중소기업(50개사) 대상 전화인터뷰 실시 ○ 비상대응반 가동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부회장 반장으로 대응체계 구축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대응반 체계 구축 및 본회 지원방향 언급 ○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마스크 1만개 지원 (3일) ○ 중기부장관 현장 간담회 개최 (4일) ○ 경제부총리 간담회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부품 수급 대책마련, 정부 지원자금 조속 집행 등 건의 ○ 중企 코로나19 피해 1차 조사결과 발표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34.4% 타격 응답 (제조업31% / 서비스업37.9%) ○ 관세청장 간담회 (11일) ○ 중소기업 대상으로 협동조합 단위의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 (12일~) ○ VIP-경제인 간담회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관련 은행 일선 창구 적극행정 건의 등 ○ 노란우산 대출금리 인하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 → 2.9% (0.5%p 인하) ○ 한국은행 간담회 (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개대출 확대, 중기대출안정화프로그램 적극 가동 및 요건 완화 건의 ○ 착한 마스크 기업, (주)에버그린 방문 격려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영선 장관 ○ 국무총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제도 지원, 무역금융 확대 건의 ○ 코로나19비상대응반 → 비상대책본부로 격상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본부장 : 중앙회장 ○ 코로나19 피해 2차 조사결과 발표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70% 타격 응답 (수출기업 66.7% / 수입기업 78.2%)

구분	주요 내용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출입기자단 티타임 (27일), 대정부 정책제언(27일)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② 중소기업 신용평가기준 탄력적용 및 특별보증 공급 ③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④ 중국산 원자재·부품의 국산 대체 비용 지원 ⑤ 마태 육성 산업의 원자재·부품 국산화 지원 ⑥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신속·간소 행정 지원 ⑦ 방역 지원 및 휴업보상금 지급 ⑧ 해외전시회 취소·연기로 인한 기집행 비용 지원 ⑨ 국내전시회 개최 취소에 따른 관련 업계 지원 ⑩ 마스크 등 위생용품 필수 업종 지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한 임대인 운동 전개 (28일~) ※ 정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과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권 공급확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등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납부유예 대책 마련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란우산공제기금 3개월 부금 납부유예, 공제기금 대출 한도 및 상환 유예 ○ 서울시장 간담회 개최 (2일)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계 「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지원 ② 영세 소상공인 방역 지원 및 휴업보상금 지급 ③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④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⑤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 확대 ⑥ 서울시 PL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⑦ 서울시 공공기관 5천만원 미만 조합추천수의계약 지원 강화 ⑧ 「서울 마스크 제조기업」 긴급 자금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앙회 재택근무 실시 (2일~) ○ 협동조합 방역물품 지원 (4일,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 대민접촉이 많은 조합을 중심으로 방역마스크 3만개와 손세정제 및 제균티슈 각 1만개를 긴급 전달 - <2차> 영남권 이외 조합에 면마스크 1.5만개, 손세정제 및 제균티슈 각 1만개 전달 ○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 개최 (5일)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② 코로나 외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적극적 인가 ③ 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 코로나19 상황 최대한 감안 ④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도 상향 ⑥ 뿌리기업 인력난해소 위한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 </div>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용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1억까지, 해당 업종 우선 선정 등 ○ 대구업체 코로나피해 실태조사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100개 업체 대상 ○ 코로나 피해 수출입 기업 실태조사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312개 업체 대상 ○ 코로나19 추경의 조속 통과 바라는 중소기업계 호소문 발표 (12일) ○ 중기부장관 간담회 개최 (16일)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구경북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단 대책 마련 ②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실효성 강화 ③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등 ④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⑤ 국제분쟁 발생 시 대응비용 지원 ⑥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마스크 수출 피해기업 지원 ⑦ 영세 소상공인 방역 지원 및 휴업보상금 지급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확대 ⑨ 산업현장 제조활동을 위한 마스크 수급 지원 </div>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17일) ○ 청와대, 경제주체 원탁회의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만기대로 대출원금 1년 연장, 추가 특례보증,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한도(75%→90%) 확대, 기업인 주요수출국 예외입국 허용 등 건의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정부정책 주요 반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 특례보증 확대 ⇒ (3.24) 금융시장 안정화 :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제공, 만기도래 대출금 만기연장을 위한 시중은행 계도 ⇒ (3.25) 추가지원방안 : 기은/산은/수은 수출입기업 만기도래 대출금 만기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90%까지 확대 ⇒ 기업인 주요 수출국 예외입국 확대 추진 중(산자부) </div> ※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 발표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교통, 관광, 수출 분야 등 분야별 지원정책 발표 ※ 정부,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 (1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한도 추가 특례보증, 중기, 소상공인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등 ※ 정부,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기관의 기업자금 공급 및 확대, 일선 창구 집행을 위한 제도 마련, 신속 집행 등

구분	주요 내용
3월	<p>※ 정부,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2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기업 만기연장 및 자금지원, 보증지원,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중소기업 90%까지) 등 <p>○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권 (부산·울산·경남) : 19일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 : 20일 - 강원권 : 23일 (오전) - 수도권 (인천·경기) : 23일 (오후) - 서울 : 24일 (오전) -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 24일 (오후) - 전국조합 : 25일 <p>○ 기자간담회 개최 및 정책제언 (26일)</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속대출·금리인하·만기연장 등 쉰 금융권의 「착한금융」 신속 확산 ②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③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④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⑤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직접지원 강화 ⑥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정부 지원 ⑦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요건, 절차 간소화 ⑧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⑨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⑩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 및 조기 발주 ⑪ 백화점·면세점 등 입점 피해 중소기업의 홈쇼핑 방영을 통한 판로지원 ⑫ 원자재 구매 자금 비용 지원강화 ⑬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원강화 ⑭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요청 ⑮ 인증 수수료 지원 확대 및 인증 규제 완화 ⑯ 중소기업 환경 부담금 `20년 한시적 면제 ⑰ 중소기업 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div> <p>○ 제3차 코로나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407개 업체 대상

구분	주요 내용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주재 경제5단체장 간담회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와 별개의 담보인정 비율 확대 및 신속대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한시적 추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상향 조정 및 조기발주,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한시적 지원 등 건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정부정책 주요 반영내용〉</p> <p>⇒ (3.27)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 : 담보인정비율 확대 및 신속대출</p> <p>⇒ (3.30)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 보험료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일부반영</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역할 분담을 통한 개선, 초저금리 대출(1.5%),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 (30일) ※ 정부,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발표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하위 40%로 감면 대상 확대, 국민연금 납부유예(3개월), 고용보험 유예(3개월), 산재보험 납부유예(3개월) 및 감면(30% 6개월) - 전기료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III 발표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점, 마이스 산업 등 관광산업 지원,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지원, 영화업계 지원 등 ※ 정부,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발표 (8일) ※ 정부, 위기를 기회로, 수출활력 제고방안 발표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공급망(GVC) 안정화, 기업 R&D 부담 경감 ※ 정부,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방안 발표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벤처 융자보증 공급 확대, 민간 벤처투자 촉진방안 ※ 정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발표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최대 10일로 확대(금액 일5만원) ※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 IV 발표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도로·하천 점용료, 계류장 사용료 등 부담금 감면, 스포츠·농수산 분야 지원 ○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참여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 만기연장, 산기보 만기연장시 일부금액 상환 요구 지양, 금감원에 3%룰로 감사선임 대란이 발생하여 생긴 규제 완화 요청

구분	주요 내용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2020년 온라인전시회 사업 참여기업 모집 (13일)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②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③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한시적 연장조치 ○ IBK기업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식'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란우산 가입 고객 대상 기존 여신금리 보다 0.75%낮은 이자율로 1,500억원 대출 제공 협약 ※ 정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발표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 특별대책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고용안정 지원금,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40조원 「100조원+@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확대방안 : +35조원) ※ 정부,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주력산업 대상 금융안전망 강화 (산업 생태계 보호 관점의 긴급 유동성 공급 강화, 수출 관련 유동성 공급 강화, 이행 점검 강화 등 현장체감도 제고) -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 (자동차) 부담 완화 + 수요 창출 (항공) 긴급 유동성 지원 + 비용부담 완화, (해운) 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 확대, (정유·조선) 세금납부 유예, 제작금융 지원 등 현장 수요에 대응)

II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계 「착한 임대인 운동」

□ 주요내용

- (추진방향) “약자가 약자를 보호한다”, 중소기업계 「착한 임대인 운동」
- (추진방식) 범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조합을 통해 회원사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요청,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 (추진내용) 임대료 자발적 인하 독려 및 모범사례 발굴

임대료 인하	○(대상) 소상공인 대상 임대인 ○(내용) 향후 3개월간 임대료 최대 50% 인하 캠페인 전개
모범사례 발굴	○(대상) 지역본부 및 중단협, 각 시장·상점가 조합 ○(내용) “착한 임대인 찾기”, 감사패 전달 등 사례 확산

- (추진기간) '20. 3. 2 ~ 6. 30 * 코로나 19 관련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참여대상

- 중소기업 단체 및 조합
 - 16개 중단협, 중앙회 부회장 및 이사, 지역 중소기업회장, 회원조합 이사장 및 단체장 등 645개 협동조합 및 단체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임대사업자) *985명 참여의향(13(금) 기준)
 -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자 125만명 중 부동산임대업자 약 12만명

※ 중소기업중앙회,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현황

1. 중앙회관 임대료 인하

- 총 23개 영업장 중 여의도 2개 업체 제외한 21개 업체에 대해 면적기준 10%~30%인하
 - * 여의도 : 9개 / DMC : 11개 / 개발원 : 1개
 - 제외업체 : 아피제(대기업군), 더파티움(예약식장 신규업체)
 - 면적기준 : 30평이하(30%), 150평이하(20%), 150평 이상(10%)
- 적용시기 : 3월 1일부터(2개월간)

2. 대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입점업체 임대료 인하

- 판매장 임대료 50% 인하(2.28~ 별도결정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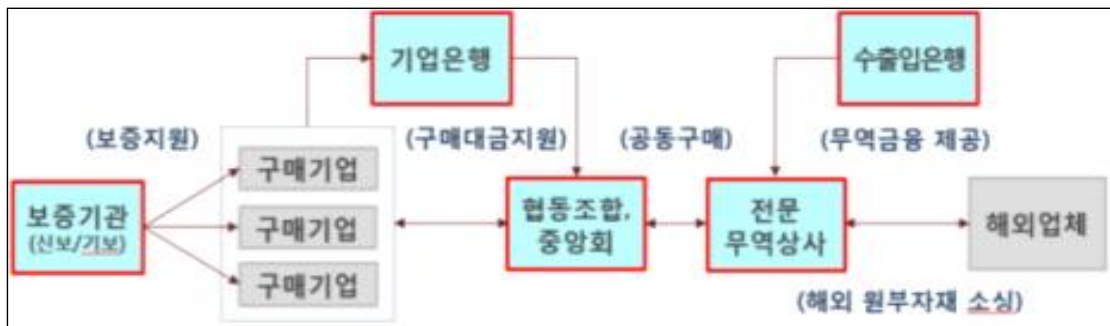
② 노란우산공제 및 공제기금

- 노란우산 대출이자율 0.5%p 인하 (3.4% → 2.9%)
 - 대 상 : 노란우산 대출이용자 약 15만명 및 신규 대출자
- 노란우산 부금납부 6개월 유예
 - 대 상 : 노란우산 가입자 약 125만명(신청자에 한함)
- 노란우산 대출 확대
 - 부금내 대출 확대
 - ('19년) 14,300억원/15만명 → ('20년) 20,000억원/20만명
- 노란우산 가입자 IBK기업은행 대출이자율 0.75%p까지 인하(1,500억원 규모)
 - 대상 : 노란우산 가입자 중 기업은행 대출 이용자
- 공제기금 부금납부 6개월 유예
 - 대 상 : 공제기금 가입업체 약 17천개사(신청기업에 한함)
- 공제기금 대출상환 1년 연장
 - 대 상 : 공제기금 대출업체 약 4,100개사(신청기업에 한함)

③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 개 요
 -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제도」는 전문무역상사((주)아이마켓코리아 등)가 공동구매를 통해 수입 원부자재의 단가를 낮춰 공급하는 제도
 -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협업하여 보증서 발급 및 자금대출을 통한 구매대금도 지원

□ 추진체계 및 절차



〈참가신청〉	〈구매약정〉	〈보증추천〉	〈보증발급〉	〈약정체결〉	〈공동구매〉
참여기업	참여기업→ 무역상사	중앙회	보증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신청서 제출	공동구매 (수입) 확정 *발주계약 체결	보증기관 추천 (신보, 기보)	보증심사 및 발급	보증발급 후 기업은행 약정	KBIZ공동 구매플랫폼* 내 거래

* KBIZ공동구매플랫폼(<http://coopbuy.kbiz.or.kr>)

④ 수출권소사업 등 수출지원

□ 전시회 연기(취소)에 따른 지원

- 사전준비단계 旣집행비용 지원
 - 사전시장조사비, 홍보물제작비, 물류비 등
- 내년도 동일 전시회 신청시, 우선 선정 및 지원

□ 2020 온라인전시회 사업 실시

- 홍보동영상 콘텐츠 제작, 온라인 전시관 등록, 마케팅 지원

□ 추후 불용예산 규모에 따라 하반기 지원 대상 추가모집·선정

⑤ 보건용품 스마트공장 구축 신속지원

□ 마스크 등 제조기업 우선 선정·구축 지원

- 구축유형별 최대 1억원 지원, 전문가 멘토링·기술지도 병행

참고1 코로나19 관련 정부 주요 지원정책(일반)

① 주요 금융지원 프로그램(4.1일 기준)

유형	대상	기관명	프로그램명	규모 (조원)	문의처
초저금리 대출 (1.5%)	소상공인	1~3 등급	시중은행 (지방은행 포함) - (대상)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한도) 업체당 3천만원 - (보증수수료) 없음 - (대출기간) 1년 [초저금리 적용 : 1년]	3.5	각 지점 * 4.1일 시행 (~연말까지)
		1~6 등급	기업은행 -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 (한도) [기업형 소상공인 업체당 1억원 [가계형 소상공인 업체당 3천만원 - (보증수수료) 0.5% - (대출기간) 1년 [연장시 최장 8년] [초저금리 적용 3년]	5.8	1588-2588 (ibk.co.kr) * 4.1일 시행
		4등급 이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한도) 업체당 1천만원(무보증) [특별재난지역 소재업체 : 1,500만원 - (대출기간) 5년[2년거치] [초저금리적용 5년] ※ 홀짝제, 온라인 대출신청 서비스 시행	2.7	042)363-7130 (semas.or.kr) 각 지역센터 * 3.25일 시행
특례보증 & 소액자금 전액보증	중소 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대상) ①대구경북소재기업 또는 ②코로나19 피해기업 - (한도) 업체당 3억원 - 보증료율 0.3%p 인하, 보증비율95% - 심사절차 간소화, 영업점장 전결	1	1588-6565 (kodit.co.kr) 각 지점
			소액자금 전액보증 - (대상)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 (한도) 업체당 5천만원 - 체크리스트 위주 간이·신속심사 - 보증료율 0.5%p 인하, 전액보증(100%) - 신보기보지역신보 中 한 곳에서만 신청 -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0.6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 (대상) 코로나19 피해기업 - (한도) 기업당 3억원 - 보증료율 1.0%(고정), 보증비율 95%	0.9	1544-1120 (kibo.or.kr) 각 지점
			소액자금 전액보증(상동)	0.3	
		지역신용 보증재단	특례보증 -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 (한도) 기업당 7천만원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보증료율 0.8%, 전액보증(100%)	3.6	1588-7365 (koreg.or.kr) 각 지역재단
			소액자금 전액보증(상동)	2.1	

중소·중견 자금지원 확대 (필요시 대기업 포함)	일반 기업	산업은행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대상)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기업 - (한도) 중소 50억원, 중견 100억원 - 최대 0.6%p 금리우대, 1년지원	5	02)787-5612 (kdb.co.kr) * 3.26일 시행
		기업은행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 (대상) 코로나19 인한 애로기업 - (한도) 기존한도 외 특별한도 부여 - 최대 0.5~1.0%p 금리 우대	10	1588-2588 (ibk.co.kr) * 4.1일 시행
		중소기업 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 (대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 (한도) 업체당 10억원[3년간 15억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現 2.15%) - (대출기한) 5년[2년거치]	0.9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 (대상) 어려운 수출 및 주력산업 中企 - 보증비율 90% 이상, 보증료율 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5.4	1588-6565 (kodit.co.kr)

+ **쏘 금융권*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 6개월 이상**(4.1일부터 시행예정)
 *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현장 애로사항 발생 시
 ①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 연락** 또는 ②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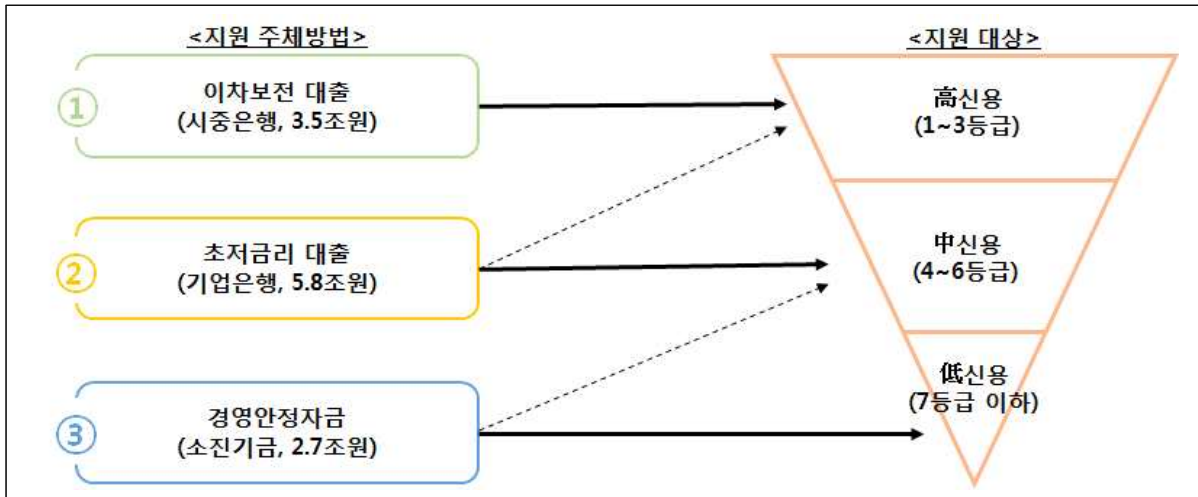
【 코로나19 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정책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357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130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한국무역보험공사	☎ 1588-3884
은행			
산업은행	☎ 02)787-5612	수출입은행	☎ 02)3779-6114
	☎ 02)787-5615		☎ 02)3779-6253
기업은행	☎ 1588-2588	경 남	☎ 1600-8585
신 한	☎ 1577-8000	대 구	☎ 1566-5050
우 리	☎ 1588-5000	부 산	☎ 1588-6200
하 나	☎ 1588-1111	광 주	☎ 1600-4000
국 민	☎ 1588-9999	제 주	☎ 1588-0079
농 협	☎ 1661-3000	전 북	☎ 1588-4477

①-1 주요 지원 프로그램 세부사항(자료:금융위)

1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①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금융지원패키지 내 프로그램(이차보전·초저금리·경영안정자금) 간에는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음(부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가.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 ◇ 지원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
- ◇ 한도 : 1,000만원 (보증不要)
- ◇ 금리 : 1.5% (최대 5년)

①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개인신용등급 기준)만 신청 가능

②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름(4.1일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 → 홀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사람 →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③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택1) 보유 필요

☎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 대표번호 : 042-363-7130

나. 중신용자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 지원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 한도 :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 ◇ 금리 : 1.5% (초저금리 적용기간 : 최대 3년간)

(1)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4.1일부터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3~5일내에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을 수령 가능(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신·기보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자금 수령시 까지 2~4주가 소요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①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이고 ②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4.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

* 소진공 자금의 신청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

발급처	서류명
고객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무서 (인터넷발급 포함) (www.hometax.go.kr)	매출액 확인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전 금융기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다.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 지원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 한도 : 3,000만원 (보증不要, 신용대출)
- ◇ 금리 : 1.5% (최대 1년)

1] 기업신용등급 1 ~ 3등급(은행상담 후 확인 가능)만 이용 가능

※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12.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초저금리 혜택은 최대 1년

☎ 문의사항 :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은행명	전화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국 민	☎ 1588-9999	경 남	☎ 1600-8585
신 한	☎ 1577-8000	대 구	☎ 1566-5050
우 리	☎ 1588-5000	부 산	☎ 1588-6200
하 나	☎ 1588-1111	광 주	☎ 1588-3388
농 협	☎ 1661-3000	제 주	☎ 1588-0079
수 협	☎ 1588-1515	전 북	☎ 1588-4477
씨 티	☎ 1588-7000	SC제일	☎ 1588-1599
은행연합회	☎ 3705-5000		

2]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 한도 : 5,000만원
- ◇ 우대사항 :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1] 4.1일부터 신보·기보·지역신보 中 한 곳에서만 신청

2]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문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2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가.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 우대조건 : 최대 0.6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 3.26일부터 기업의 신청접수·지원 중

-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db.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 ◇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 4.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소재·부품·장비 영위기업	· 최대 0.5%p 금리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2.0조원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 최대 0.5%p 금리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2.0조원
중소벤처기업	· 최대 0.5%p 금리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1.6조원
지방 중소기업	· 최대 1.0%p 금리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담보인정비율 상향	1.0조원
혁신성장 영위기업	· 최대 1.0%p 금리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1.0조원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 최대 1.0%p 금리우대	2.4조원

-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ibk.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일부 포함)
- ◇ 자금용도 : 수출입·해외진출 사업 지원
- ◇ 우대조건 : 0.3%~0.9%p 금리 우대
0.15~0.25%p 보증료 우대

□ 4.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등 신청접수·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운영자금 지원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0조원
긴급 경영자금 지원	· 수출입계약·실적없거나 대출 한도 소진기업	· 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0조원
수출실적 기반자금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소부장 부문	·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지원	2.0조원
무등급 수출기업 지원	· 기존 미거래 외감기업	· 정성평가 생략 · 금리우대 : 최대 0.9%p	0.2조원
수출입·해외진출 보증	·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 보증료 우대 : (중소)0.25%p (중견)0.15%p	2.5조원

- ➡ 수출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①-2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자금융기부)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주요 지원사항

○ 신규 공급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병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용자조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20.1분기 2.15%) (단,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기업은 1.9% 고정금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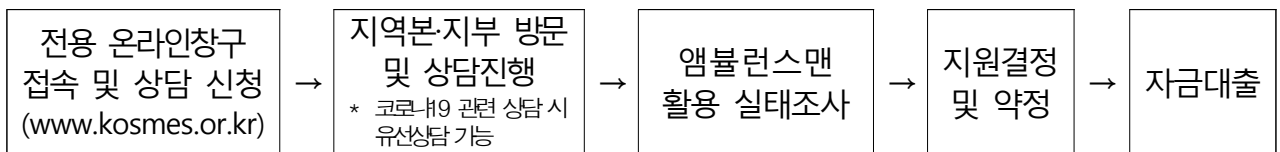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만기연장	○ 최소 상환요건(원금 25% 이상) 미적용 ○ 가산금리 감면(0.5%p)
상환유예	○ 최소 상환요건(원금 10% 이상) 미적용 ○ 유예기간 연장(6개월 → 9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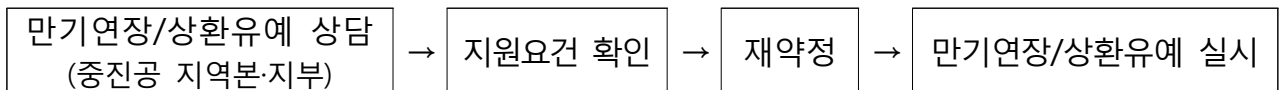
* 이자는 매달 정상 상환하며,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추진

□ 신청 절차

○ 신규 공급



○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항

○ 신규공급[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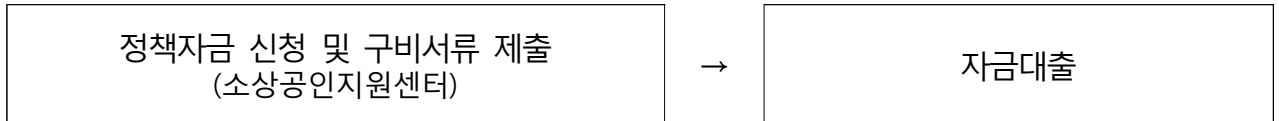
지원대상 * 신용등급 4등급 이하	①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②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③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용자조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초저금리 적용 : 5년] (대출한도) [직접대출] 기업당 1천만 원 이내 / [보증서대출] 업체당 7천만원 (대출금리) 1.5% 고정금리 적용 [보증서대출 시 0.8% 보증수수료율]

○ 만기연장

지원대상	신규 공급과 동일
만기연장	피해규모에 따라 만기연장 기간 차등 적용

□ 신청 절차

○ 신규공급[직접대출]



□ 직접대출 비중 확대(2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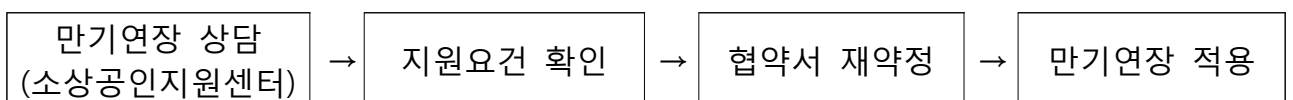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 운영중인 직접대출 비중 확대로 신속한 자금 집행 추진(5일 이내 대출 가능)

※ 소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으로 대출 신속 실행 가능, 매출액 감소 증빙 불필요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 확대

- 지역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책자금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

○ 만기 연장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3 기술보증기금

□ 지원사항

○ 신규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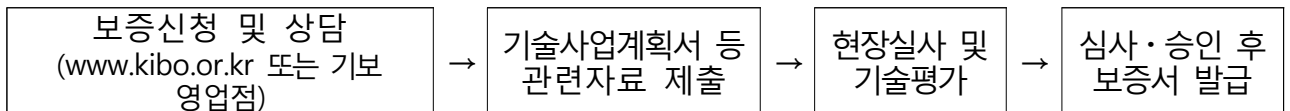
지원대상	<p>아래 "대상기업 세부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 운영업 등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보증조건	<p>(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심사기준 완화) 연체대출금 사실 요건 완화</p>

○ 만기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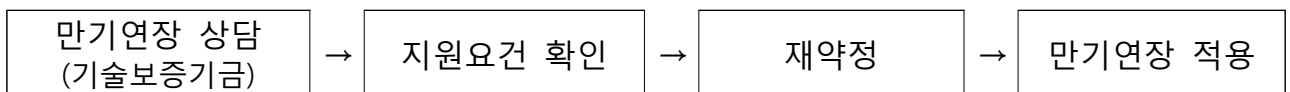
지원대상	신규 공급과 동일
만기연장	<p>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다만, 대중국 수출입 실적보유 기업은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p>

□ 신청 절차

○ 신규 공급



○ 만기 연장



□ 문의처

- 통합콜센터 대표번호 1544-1120 또는 각 영업점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원사항

○ 신규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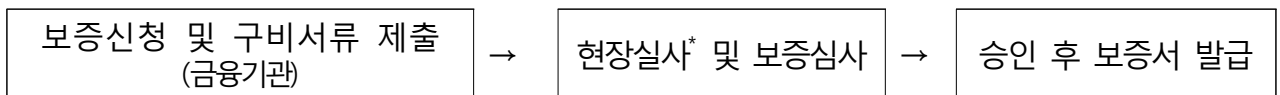
지원대상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②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보증조건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0.8%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 만기연장

지원대상	신규 공급과 동일 (2020.2.13.~6.30. 기간에 만기가 도래한 업체 대상)
만기연장	대출원금 상환없이 1년간 만기연장

□ 신청 절차

○ 신규 공급 : 보증신청 접수 업무 등 시중은행 위탁(방문 불필요)



* 보증신청 접수 업무 등 시중은행 위탁, 지역신보 방문 불필요(보증·대출 일괄실행)

** 업력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현장실시 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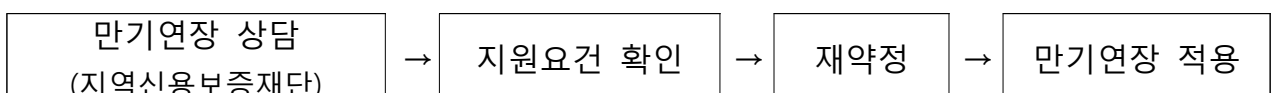
□ 소액보증 신속심사 및 심사 간소화

○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전체의 66.5%)는 최소요건*만 심사

* 보증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요건은 국세청 휴폐업사실 조회로 같음하고, 보증 심사 기준일 현재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만 없으면 기보증과 무관하게 보증

- (연체제한 완화) 현재 연체사실만 없으면 과거 연체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 (중첩보증 완화) 지역신보별 중첩보증 제한기간(3개월 ~ 1년)을 2개월로 완화
- (서류간소화) 소액심사(3천만 원 이하)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침해 심사 생략 가능

○ 만기 연장



□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7365

①-2 은행권 지원 프로그램

은행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처
국 책 인 행	산 은 ▷ 코로나19 피해 중견·중소기업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100억원 최대 0.6%p 금리우대, 1년지원	02)787-6911
		경영안정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금리감면 無	02)787-5612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02)787-5615
	기 은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대출(해내리대출) * 기업당 최대 3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1588-2588
	수 은 ▷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해외진출 중견·중소기업	수입선 다변화 대출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02)3779-6114 02)3779-6253
일 반 인 행	농 협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 등 소상공인 ▷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 개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농업인 최고 1.7%),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661-3000
	신 한 ▷ 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中소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신규·기한연장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5,100억원)	1577-8000
	우 리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음식·숙박·관광업 등 내수피해 소상공인	• 신규대출 및 대출 기한연장(총 1,000억원 규모) • 최고 1.3%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5,500억원)	1588-5000
	하 나 ▷ 코로나19 피해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최고 1.3% 금리감면	1588-1111
	국 민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 납입 시 연체이자 면제(코로나바이러스 피해사실 확인 기업) • 최고 1% 금리감면, 저신보 특별출연대출(4,600억원)	1588-9999
	대 구 ▷ 코로나19 확진지역 소재 中소 ▷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 또는 예정 기업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 최고 1.5% 금리감면	1566-5050
	부 산 ▷ 피해우려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588-6200
	광 주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500억원 규모) • 대출 기한연장(총 500억원 규모) •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금리 최고 1.3% 감면	1600-4000
	제 주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총 1백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1588-0079
	전 북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588-4477
	경 남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600-8585

② 인력 운용 지원

[고용센터]

□ 감원 없이 휴업·휴직시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코로나19에 의한 매출액 감소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감액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 정부는 유급휴업·휴직시 기업에게, 무급휴업·휴직시 근로자에게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하면, 중소기업에 정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상한이 66천원이므로 휴업수당이 월 198만원 (=6만6천원×30일)을 초과하는 경우상한액만큼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 금액은 기업이 부담
-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workplus.go.kr 접속 후 확인)

구분	대상	경우	지원명	지원내용	
코로나19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 발생시 (고용부)	기업	유급 휴업·휴직시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급여 등)	수준	중소기업·소상공인 9/10 그 외 기업 2/3
				한도	1일 6.6만원 (월 198만원)
	근로자	무급 휴업·휴직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한도	1일 6.6만원
				요건	① 무급휴직 90일 이상 실시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 3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75%,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 적용

[사례1] A기업(중소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월 300만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
 ⇒ 휴업수당이 210만원¹⁾ 발생하며
 그 중 정부가 189만원²⁾ 지원해 기업은 21만원 부담
 1) 휴업수당 210만원 = 월임금의 70% (300만원 × 70%)
 2) 정부 지원액 189만원 : 휴업수당 총액(210만원)의 90%인 189만원을 30일로 분할하면 1일 63,000원이므로 1일 지원 상한액(6만6천원)을 초과하지 않아 90% 전액인 189만원 지원

[사례2] B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월 500만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시
 ⇒ 휴업수당이 350만원¹⁾ 발생하며 그 중 정부가 198만원²⁾ 지원해 기업은 152만원 부담
 1) 휴업수당 350만원 = 월임금의 70% (500만원 × 70%)
 2) 정부 지원액 198만원 : 휴업수당 총액(350만원)의 90%인 315만원을 30일로 분할하면 1일 10만 5천원으로 1일 지원 상한액(6만6천원)을 초과하여 지원 상한액 월 198만원(=6만6천원×30일)만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 개요 :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실시 기업에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지원요건 :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출퇴근 관리*한 기업**

* 출퇴근관리 : 전자.기계적 방식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허용)

- 지원내용 :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workplus.go.kr 접속 후 확인)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지원

- 개요 : 기존 법상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장려 차원에서 일부 지원

- 지원요건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근로자당 최대 10일, 한부모 10일)을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 신청 및 문의 : 가까운 고용센터(workplus.go.kr 접속 후 확인)

[근로복지공단]

□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 확대

- 지원대상 :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지원요건 : (이전) 월평균소득 3인 가구 '20년 기준 259만원 이하(중위소득의 2/3)
→ (개선) 월평균소득 3인 가구 '20년 기준 388만원 이하(중위소득)

- 신청 및 문의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대표1588-0075)

[국민연금공단]

□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으로 근로자 휴가시 지원

-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근로자 유급휴가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1일 13만원 한도에서 기업에 지원

- 신청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대표 1335)

③ 기타 지원 대책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 임차인 요건 : ①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②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제외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전선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20개 시장)

-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 지원규모

- ▶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천만원 限)
- ▶ 국가 위탁개발 재산 : 임대료 50% 감면(2천만원 限)
- ▶ 지자체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최저1% 인하

-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임대료 인하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LH), 공항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공)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등 임대시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지원규모

- ▶ 6개월간 임대료 20 ~ 35% 인하(임차인과 협의)
- ▶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 유예신규 공급

□ 영세 개인사업자 세부담 완화

-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간이과세 방식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5~30%) × 10%]

참고2 코로나19 관련 정부 주요 지원정책(수출입)

① 관세행정 지원

[관세청]

□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

-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대상기업 반입 원부자재에 대해 화물 반입~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 * 전국세관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사유기재) 시 최우선 처리
- (검사선별·심사 최소화) 수입심사 시 서류제출·검사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입신고 시 즉시처리

□ 국내 피해업체 경영안정 지원

- (세정지원 강화) ①납기연장·분할납부, ②당일 관세환급, ③관세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제혜택 제공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

① 납기연장·분할납부

-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

② 당일 관세환급

- 피해기업 환급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 당일 환급 결정·지급

+

③ 관세조사 등 유예

-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 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 시 연기

- (애로해소센터* 운영)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지원 시행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접수센터」 설치

② 해외시장개척

[KOTRA]

□ 화상상담 지원사업

- 개요 : 코로나19로 수출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을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품목 맞춤형 바이어 매칭 및 화상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상 상담을 통해 국내기업 사업장에서도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진행이 가능하며, 필요시 통역 및 장소는 KOTRA가 지원
- 지원사항
 - ①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 ② 바이어와 1:1 화상상담 지원
 - ③ 화상상담을 위한 통역 무료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KOTRA 홈페이지 → 수출지원 → 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
 - * 1:1 화상상담은 코트라 시설 이외에 기업의 사무실·자택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통역지원까지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음

< 화상상담회 진행 절차 >



□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 개요 : Amazon US(미국), Amazon EU(유럽), Shopee(동남아), Qoo10 Japan(일본) 등 해외 주요 온라인 유통망 입점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으로 유통망 입점 준비 기업 대상 교육부터 플랫폼 입점 이후 인플루언서 활용 전문 마케팅까지 각 기업의 해외수출 및 마케팅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 지원내용 및 절차

가. 글로벌 유통망 파워셀러 육성사업

- ▶ 사업 공고 → 참가 신청 →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온·오프라인 입점교육* → 교육 종료 후 우수기업 선정 → 연중 지원

* 코로나19 영향 기간 중에는 웨비나(온라인교육)로 교육

나. 유통중점 무역관 활용 전략시장 진출사업

- ▶ 사업 공고 → 참가 신청 → 시장성 평가 및 선정 → 참가비 납부 →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결과 보고

※ 세부사항은 KOTRA 홈페이지 → 수출지원 →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마케팅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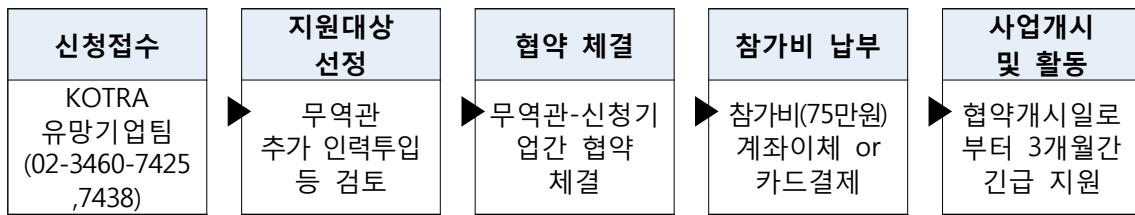
□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 사업

- 개요 : 코로나19 대응 및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buyKOREA에 온라인 상품관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 제품의 홍보, 구매오퍼 발굴, 1:1 화상상담 등을 지원
- 신청방법 : buyKOREA 로그인(www.buykorea.or.kr) → buyKOREA 내 상품 정보 등록 및 업데이트 → ‘모집중인 행사’ 내 2020 온라인 상품관(산업명) 참가신청 클릭

□ 긴급 지사화사업

- 개요 :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해외 현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을 위해, 해외무역관이 거래선관리, 인허가 취득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긴급 해외마케팅 대행을 3개월간 지원
 ※ 외교부 발표 한국발 입국자 제한 국가(①입국금지, ②격리조치, ③검역강화) 소재 무역관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긴급 지사화' 검색 후 E-mail 서류제출

< 해외 현지 마케팅 대행 지원 진행 절차 >



※ KOTRA 지원사업 신청 및 문의처

담당부서	전화번호
디지털무역팀(화상상담)	02-3460-7432
유망기업팀(현지대행지원)	02-3460-7426~7429
부산 KOTRA 지원단	051-740-4151~55
대구경북 KOTRA 지원단	053-585-3400
대구경북 KOTRA 지원단(구미)	054-455-2970
광주전남 KOTRA 지원단	062-369-9051~9
경기 KOTRA 지원단	031-273-6032~9
인천 KOTRA 지원단	032-822-9360~3
대전충남 KOTRA 지원단	042-862-8311~6
강원 KOTRA 지원단	033-261-5312,5314,5315
전북 KOTRA 지원단	070-7931-0801~0814
울산 KOTRA 지원단	052-289-4651~2
충북 KOTRA 지원단	043-217-0016
경남 KOTRA 지원단	055-290-0600~0622
경기북부 KOTRA 지원단	070-7931-0744

㉓ 무역금융 주요 지원 프로그램(4.1일 기준)

유형	대상	기관명	프로그램명	규모 (조원)	문의처
중소·중견 자금지원 확대 (필요시 대기업 포함)	수출입· 해외진출 기업	수출입 은행	기존대출 만기연장 - 최대 1년 연장, 금리 최대 0.5%p 우대	11.3	02)3779-6114 (koreaexim .go.kr)
			신규대출 ① 기존 거래기업 지원 - 중소기업 0.5%p, 중견 0.3%p 금리인하 - 중소기업 이자납부 6개월 유예 ② 미거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 (한도) 재무등급별 5~100억원 - 0.5%p + 상품별 기본마진 일괄 차감 - 정성평가 생략, 재무제표 신속 심사 ③ 긴급경영자금 신설 - 평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우대지원(중소·중견 50%, 대기업 30%) - 중소기업 0.5%p, 중견 0.3%p 금리우대	6.2	
			신규보증 - (대상)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중소기업 0.25%p, 중견 0.15%p 보증료 우대	2.5	
		무역보험 공사	유동성지원, 수출할력제고, GVC 고도화 제고		1588-3884

+ **쏘 금융권*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 6개월 이상(4.1일부터 시행예정)**

*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현장 애로사항 발생 시

①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 연락 또는 ②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접수

【 코로나19 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정책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357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130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한국무역보험공사	☎ 1588-3884
은행			
산업은행	☎ 02)787-5612	수출입은행	☎ 02)3779-6114
	☎ 02)787-5615		☎ 02)3779-6253
기업은행	☎ 1588-2588	경 남	☎ 1600-8585
신 한	☎ 1577-8000	대 구	☎ 1566-5050
우 리	☎ 1588-5000	부 산	☎ 1588-6200
하 나	☎ 1588-1111	광 주	☎ 1600-4000
국 민	☎ 1588-9999	제 주	☎ 1588-0079
농 협	☎ 1661-3000	전 북	☎ 1588-4477

㉓-1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

1 무역보험공사

□ 지원사항

○ 유동성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일 기준 對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 기업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對중국 수출비중 30% 초과 기업 - 중국 수입자의 계약 파기취소, 불가항력적 물류지체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 수출대금 미회수 등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공사가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p>가. 중국 수입자 미결제에 대한 사고 발생건에 대한 신속보상 →보상심사 완료 이전이라도 보험금의 최대 80%까지 가지급 가능 →보험금 지급기한 단축(보험금 청구 후 2개월 이내 →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p> <p>나. 채권회수 대행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에게 중국 미부보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p> <p>다. 무역금융 우대지원 →만기도래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신규·증액 건에 대해서는 보증료 20% 할인</p> <p>라. 선적후 유동화 지원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신용보증(Nego),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료 20% 할인</p>

○ 수출 활력 제고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일 기준 對중국 수입자와의 무역보험 유효한도 보유 기업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對중국 수출비중 30% 초과 기업 - 중국 수입자의 계약 파기취소, 불가항력적 물류지체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 수출대금 미회수 등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공사가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p>가. 보험료 우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단기수출보험(선적후-재판매) 보험료 할인 →중국 수출 건 만기연장으로 인한 단기수출보험 추가 보험료 면제 (연장된 만기가 선적일 또는 인도일로부터 360일 이내인 수출건에 한함)</p> <p>나. 중국 외 국가로의 수출다변화 지원 →대체 거래처 발굴을 위한 수입자 신용조사 무료제공(5회) →중국 외 국가로 단기수출보험 신규한도 책정 시 총액한도 2배 우대</p>

○ 글로벌공급망(GVC) 고도화 지원

지원대상	중국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및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U턴 촉진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p>가. 수입보험 품목 확대 →코로나19로 수급 차질이 생긴 품목을 수입보험 지원대상에 추가</p> <p>나. 국내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간접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공급망) 부보율 우대</p> <p>다. 국내 유통기업 특별보증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에 국내 설비투자 자금 지원</p>

□ 시행기간 : '20. 2.21. ~ ' 20. 8.31 (단 코로나19 안정화 시 조기종료)

□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3884

2 추가대책 : 수출기업 금융지원(36조원+ α) 공급(4.8 발표)

① (만기 연장) 수출 보험·보증 금액 없이 만기 연장 → 30조원 지원

- 미·중·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에 대해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 (28.7조원)
- 모든 선적前 보증 가입 중소·중견기업 → 무감액 1년 만기 연장 (1.3조원)

② (특별금융)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 정책금융 5조원+ α 공급

* 해외발주처 대상 보증 지원(質保 5조원) → 수요 확대시 産銀·輸銀이 추가 공급

③ (비용 경감) 수출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50% 감면 등 (265억원)

* 할인 규모 : ①보증료(대출액 1%) 80억원, ②보험료(가입액 0.22%) 170억원

- 특별재난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 전액 경감 (15억원)

④ (유동성 지원) 수출 기업의 긴급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중소·중견기업 제작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 (0.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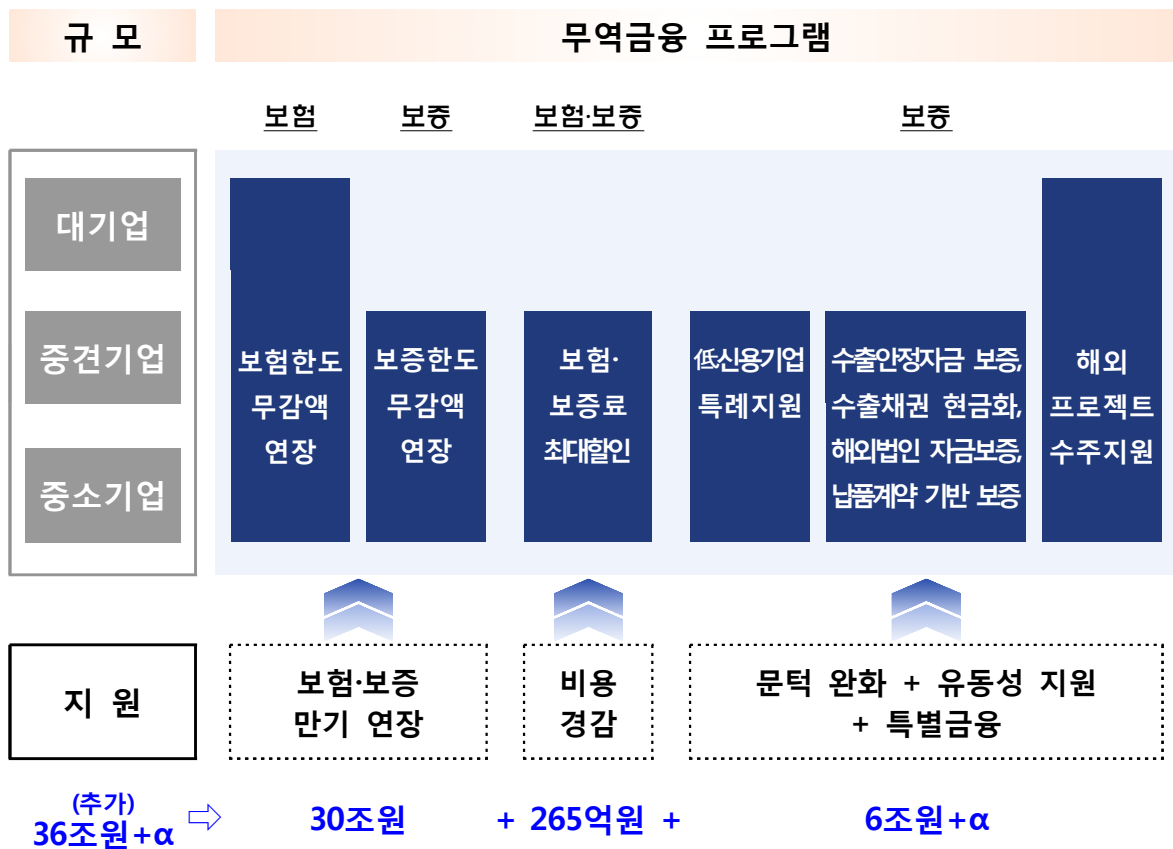
* ①수출안정자금 보증(0.1조원), ②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확대(0.5→0.7조원)
③납품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0.5조원), ④해외법인 자금 보증(0.1조원)

⑤ (문턱 완화) 신용도 기준 완화,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도입

- 수출여력은 있으나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도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 지원 (500억원)
- 온라인 보험·보증 출시(20.5월) → 기간 단축(5일→1일), 서류 간소화(3종→無)

☞ 본 방안의 결정, 운영 또는 집행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행위 및 그로 인한 발생 손실에 대해 행정상 제재 면책 및 평가시 불이익 금지

[참고 1] 기업 유형별 무역금융 및 정책 지원



[참고 2] 수출애로 해소 및 위기대응 지원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만기 연장	보험	○	○	○
	보증		●	●
비용 경감	보험료 할인		●	●
특별 금융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	○	○
긴급 유동성 지원	수출안정자금 보증		○	○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	●
	납품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	○	○	○
	해외법인 자금 보증	○	○	○
문턱 완화	低신용기업 특례지원		○	○

○ 신 규
● 확 대

참고4 코로나19 추경예산 및 조특법 통과 주요내용

□ **코로나 추경 : 11.7조** (①방역, ②중소기업·소상공인, ③민생·고용안정, ④지역경제·상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안)	통과(안)	증 감	내 용
		11.7조	11.7조	-	통과된 추경안 총액은 정부안과 동일 (취업성공패키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등 감액)
1	감염병 방역체계 구축	2.3조	2.1조	-0.2조	마스크 생산·보급, 치료제 개발, 과건의료 인력 등 추가지원(0.15조)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0.08조	0.2조	+0.12조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1.7조	1.4조	-0.3조	
	격리치료자 생활지원 등	0.5조	0.5조	-	
2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4조	4.1조	+1.4조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1.1조), 특례보증확대(0.04조), 항공·해운·운수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0.24조) 등
	경영자금 지원	1.7조	3.1조	+1.4조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0.61조	0.58조	-0.3조	
	파해점포·전통시장 지원	0.1조	0.4조	+0.3조	
3	민생·고용안정	3.0조	3.5조	+0.45조	저소득층 소비쿠폰(0.17조), 긴급복지예산(0.2조), 건강보험료 경감(0.2조), 고용안정프로그램(0.1조), 돌봄지원(0.03조) 등
	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	2.4조	2.9조	+0.5조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	0.6조	0.55조	-0.05조	
4	지역경제·상권	0.8조	1.2조	+0.4조	특별재난지역복구, 지역상권 활성화 등 증액
5	세입경정	3.2조	0.8조	-2.4조	추가 세금납부 부담경감
별 도	대구·경북 특별지원	0.6조	1.7조	+1.1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산 10조 증액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우선 배정

* 출처 :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3.17)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순번	내 용	대 상
1	간이과세 적용 확대 (평균 30-120만원 경감)	- 대상 확대 : 연매출 4,800→8,800만원 - 2020년까지 1년간 지원
2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30-60% 감면	- 소기업 60%, 중기업 30% - 2020년까지 1년간 지원 - 재난지역 중소기업 대상
3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상향	- 연매출 3,000→4,800만원
4	착한임대인 1~6월 임대료 인하 50% 보전	-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조특법 제96조의3 신설
5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15~40%→30~80%(2배확대)
6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 3~6월 구매자 대상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기획재정위원장, 20.3.17)

참고5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현황(4.16기준)

실물 피해대책	금융 안정대책	추가 보강대책
32조원	100조원	20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4조원 2단계 16조원 3단계(추경) 11.7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지원 58조원 시장안정 42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재난지원금 9.7조원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1.9조원 사회보험료 감면 0.9조원 중소·중견기업 부담경감 2.2조원 수출기업 보증·보험지원 6.0조원

→ 4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총 150조원* 규모 지원대책 마련

$(150 = (32+100+20) + 5^{1,2} - 8^2)$
 * 1, 5조원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3.5조원), 한은 국고채 매입(1.5조원), 고용유지지원금(0.4조원) 등
 2, 8조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총 12조원 중 8조원이 32조원 대책과 100조원 대책간 중복

※ 납부유예,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 효과

- ① 사회보험료, 제세금 등 납부유예 (27.1조원)
- ② 대출·보증 만기연장 (241.3조원)
- ③ 한미 통화스왑 600억불 (원화 77.1조원, 3.19 체결 당일 현물 사용)
- ④ 선결제·선구매 도입, 당겨집행 등 3.3조원

총 간접지원 효과
 ①+②+③+④
= 349조원

피해 부문·기업 지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 임대료 경감 3종 세트
-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0.7조원
-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경감 2.2조원
- 인건비부담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0.5조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0.5조원)
- 휴·폐업 점포 재기 지원 0.3조원
확진자 경유 점포 300만원, 폐업 점포 200만원 등

업종별 대책

- 항공**
LCC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비행기 착륙료 감면 등
- 해운**
선사 등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 등
- 관광**
관광기금 용자 상환유예-만기연장
무담보 특별용자 신설 등
- 공연**
제작비·관람료 지원 등
- 외식**
농식품수출업체 용자 확대 등

금융 지원

기업 등 자금지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금융 12조원
-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5.5조원
- 수출기업 보증·보험 공급 6.0조원
- 벤처·스타트업 용자·투자지원 1.9조원
- 영세 소상공인 긴급자금 전액보증 3.0조원
- 개인사업자 등 연채채권 매입 2.0조원
- 중소·중견기업 대출 확대 21.2조원

금융시장 안정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10조원+10조원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10.7조원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2.2조원
-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1.9조원
-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지원 7.0조원

코로나19 취약가계 소득 지원

-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9.7조원
- 사회보험료 감면-납부유예 8.4조원
- 저소득층 소비쿠폰 신설 1.0조원
- 긴급복지 지급요건 한시 완화 0.2조원
- 이동수당 대상자에 특별돌봄 쿠폰 지급 1.1조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

- 모든 승용차구매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3→6조원
- 고효율가전기기 10% 구매환급 1,500억원
- 온누리상품권 0.5조원 추가 발행 2.5→3조원
- 문화·휴가·관광·출산 쿠폰 지급